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가단4240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 2, 3, 4, 6의 소송대리인 G

변론 종결2020. 2. 6.

판결 선고2020. 3. 26.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9,864,378원 및 그 중 4,480,241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가. 피고 D은 19,053,921원 및 그 중 1,221,883원에 대하여,
나. 피고 E, F, G, H은 각 12,702,614원 및 그 중 814,589원에 대하여
각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I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망 I는 J,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37,941원 및 그 중 16,320,307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I는 2011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 E, F, G, H은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여 수리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수진

별지